

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

운영세칙 개정 주요내용

1. 개정배경 : 동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존 운영세칙 미비사항 수정 및 해석의 명확화

2. 신·구대조표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2조(목적) 이 세칙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신설></p>	<p>제2조(목적) ① 본 협의체는 민·관 협력을 통해 저소득가정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·연계·지원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증진을 도모한다.</p> <p>② 이 세칙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3조(위원) 위원장 및 부위원장,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</p> <p><신설></p>	<p>제3조(위원)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,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본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.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, 법인, 단체, 시설의 관계자 3.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해 자발적·실천적 의지가 있거나, 지역 내 인적·물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(종교계, 복지시설, 의료기관 등)의 대표 및 실무자 4. 동장 및 본 협의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.
<p><신설></p>	<p>제5조(임기)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</p>

<p><신설></p>	<p>제6조(위원의 해촉)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질병이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.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<p>제6조(임원의 선출) 임원의 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하고 결원이 있을 시는 보장한다.</p> <p><신설></p>	<p>제8조(임원의 선출) 임원의 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하고 결원이 있을 시는 보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동장과 위촉직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1명으로 한다. 2.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. 3.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추천하거나 위원 중 선출한다.
<p><신설></p>	<p>제11조(역할) 협의체 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인적·물적 자원 발굴과 육성 2.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와 지원 실시 3. 지역 공동 협력사업 추진, 승인 및 시행 지원 4.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
<p><신설></p>	<p>제12조(회의록)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회의 개최일시·장소 2. 출석위원 명단 3. 회의내용·안건 4. 심의결과 5.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

제정일 : 2016.03.25.

개정일 : 2018.02.08.

제1조(명칭) 본 협의체는 “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(이하 "본 협의체"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

- ① 본 협의체는 민·관 협력을 통해 저소득가정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·연계·지원 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증진을 도모한다. <신설 2018.02.08.>
- ② 이 세칙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위원)

-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,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
- ② 본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<신설 2018.02.08.>
 1.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2.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, 법인, 단체, 시설의 관계자
 3.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해 자발적·실천적 의지가 있거나, 지역 내 인적·물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(종교계, 복지시설, 의료기관 등)의 대표 및 실무자
 4. 동장 및 본 협의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.

제4조(권리와 의무) 위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고 협의체의 발전에 적극 기여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과 의결권을 가진다.

제5조(임기)

-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 <본조신설 2018.02.08.>

제6조(위원의 해촉)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1. 질병이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2.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<본조신설 2018.02.08.>

제7조(임원) 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위원장 : 2명(공공부문, 민간부문)

2. 부위원장 : 1명
3. 간 사 : 1명

제8조(임원의 선출) 임원의 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하고 결원이 있을 시는 보강한다.

1.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동장과 위촉직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1명으로 한다. <신설 2018.02.08.>
2.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. <신설 2018.02.08.>
3.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추천하거나 위원 중 선출한다. <신설 2018.02.08.>

제9조(임원의 직무)

-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,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간사는 본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,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회의 등) 본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1.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2.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역할) 협의체 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.

1.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인적·물적 자원 발굴과 육성
2.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와 지원 실시
3. 지역 공동 협력사업 추진, 승인 및 시행 지원
4.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<본조신설 2018.02.08.>

제12조(회의록)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1. 회의 개최일시·장소
2. 출석위원 명단
3. 회의내용·안건
4. 심의결과
5.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<본조신설 2018.02.08.>

제13조(비밀준수 의무) 협의체 위원은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사례관리 대상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4조(의견의 청취)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운영세칙은 정기회의에서 가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